

**공 고****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-1969호****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**

-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: 이○라외 4
- 서류의 송달지: 내용 별첨
- 서류의 명칭: 부동산 압류통지서
- 서류의 내용: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

위의 서류를 귀하(귀 법인)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1부.

2024년 10 월 15일

관 악 구 청 장

**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내역서(지방세)**

| 연<br>번 | 납세<br>자명 | 송달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송달<br>사유 | 압류물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압류일자      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     | 이*라     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1*2-1* ,<br>*02호 (도화동) | 수취인<br>부재 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<br>16*5-9* 제지하층 제10*호           | 2024.9.23. |
| 2      | 유*도      | 부산광역시 북구<br>백양대로1*72번길 1* (구포동)       | 수취인<br>불명  |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*85-7<br>우리가 제3층 제30*호          | 2024.9.20. |
| 3      | 이*훈      |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**길 **<br>*01호 (방배동)     | 폐문<br>부재   |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<br>15**-1*                      | 2024.9.27. |
| 4      | 이*건      |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** ,<br>10*-***3호 (망월동)  | 폐문<br>부재   |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***<br>****1단지 제10*동 제*층 제*05호 | 2024.9.27. |
| 5      | 전*호     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4길<br>****              | 수취인<br>불명 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<br>27-56**외 1필지 제****호        | 2024.9.26. |

**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-1970호****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**

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58호, 2024. 9. 26.)된 우리 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“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”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2조 및 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”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) 제5조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7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## 1. 사업개요

가. 구 역 명: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

나. 면 적: 76,880m<sup>2</sup>

다. 토지등소유자 수: 780명

## 2. 조합설립 기간: 2024. 10. ~ 2025. 12.

※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3.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

가. 위 원 장: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 외부전문가

나. 부위원장: 토지등소유자로 서면 및 현장투표로 선출

다. 위 원: 토지등소유자 1/20 이상(공공지원자가 선임, 부위원장 포함)

라. 업 무: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

마. 운 영: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개최

## 4. 소요예산: 389,903천원

## 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'조합설립계획서' 참조

※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(재개발팀 ☎02-879-63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
##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시행계획

## I 추진 근거

## 1. 관련법령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8조(정비사업의 공공지원)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2조(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)
-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(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4호)

## 2. 서울시방침 (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시행, '22.4.18)

## II 추진 개요

## ○ 대상지 개요

- 위 치: 신림동 675번지 일대